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74
----------	-------

발의연월일 : 2026. 7. 21.

발 의 자 : 서영교 · 정준호 · 임오경
복기왕 · 박균택 · 김영호
허 영 · 박홍배 · 박지원
박용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발생되고 있고, 오히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이중으로 교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환류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및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2(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둔다.</u> <u>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u> <u>2. 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환류에 관한 사항</u> <u>3.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u> <u>4.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및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u> <u>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에 관한 사항</u> <u>6.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u>

	<u>사항</u> <u>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원</u> <u>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u> <u>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u> <u>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교육</u> <u>활동보호 전담기구의 구성·운</u> <u>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u> <u>령으로 정한다.</u>
--	---